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

###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연번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1	3241번	우형찬의원(찬성 11명)	2025년 10월 20일	2025년 10월 23일
2	3296번	김기덕의원(찬성 15명)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우형찬 의원안

##### ■ 제안이유

-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 생활 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지만 청소년 유해 요소가 다양화되어 현장 중심의 감시와 개선 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감시단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안함.

##### ■ 주요내용

-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의3).

## 나. 김기덕 의원안

### ■ 제안이유

- 최근 서울시의 성장동력이자 핵심 주체인 청소년들의 관심사가 다양해지면서, 자칫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의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바, 유해한 환경 노출로 인한 건강한 성장의 저해 우려 만연
- 이에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조례상에 명시한 중독 예방 치료 지원 및 교육, 홍보사업 외에도 청소년 중독 예방 등을 위한 상담 및 조사·연구 등도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청소년 중독 예방 등을 위한 환경 조성 내용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5. 10. 28. ~ 11. 1.) 결과 : 의견 없음.

## 4. 검토 의견

- 우형찬의원안(의안번호 3241번)은 청소년유해환경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제6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지원 근거 마련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안 제14조의3 신설) 하려는 것이며, 김기덕의원안(의안번호 3296번)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내용(안 제14조의2)을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음.

### ※ 개정안의 내용

- (우형찬의원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 협력체계 구축 등
  - 자구 수정 (안 제2조제2호)
  -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정의 신설 (안 제2조제5호·제6호)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4조의3제1항 신설)
  -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안 제14조의3제2항 신설)
- (김기덕의원안) 청소년 중독 예방 등을 위한 환경 조성 내용 규정
  - 제14조의2 제목 변경 (안 제14조의2)
  - 청소년 중독 예방 등을 위한 환경 조성 내용 개정 (안 제14조의2)

현 행	우형찬의원안	김기덕의원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청소년”이란 <u>청소년 기본법</u> 제3조(정의) 1항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 4. (생 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청소년 기본법</u> 」 제3조제1항에 따른 -----. 3. · 4. (현행과 같음)	

<p><u>&lt;신 설&gt;</u></p> <p>제14조의2(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청소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책개발 사업</li> </ol> <p><u>&lt;신 설&gt;</u></p> <p>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청소년 중독 예방 사업</p> <p><u>&lt;신 설&gt;</u></p> <p>제14조의3 (생략)</p>	<p>5.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p> <p>6.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p>	<p>제14조의2(청소년 중독 예방 등을 위한 환경 조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교육·상담·홍보 -----</li> <li>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사·연구</li> <li>4. ----- 예방 및 치료 관련 -----</li> </ol> <p>제14조의3(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제14조의4 (현행 제14조의3과 같음)</p>
--	--	---

## 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 협력체계 구축 등 (우형찬의원안)

○ 우형찬의원안 제2조제2호는 자구 수정(법률 표기 정비) 하려는 것으로,

- 「한글 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 2017.3.28. 시행) 및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예규 제31호, 2010.12.27. 전부개정)에서 법률의 제명은 「홑낫표(「 」)」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청소년”이란 <u>청소년 기본법</u> 제3조(정의) 1항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p>3. · 4. (생 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청소년 기본법」</u> <u>제3조제1항에 따른 -----</u> -----.</p> <p>3. · 4. (현행과 같음)</p> <p>5.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p> <p>6.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p>

※ 「한글맞춤법」부록,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2017.3.28. 시행)

문장 부호
14. 홑낫표(「 」)와 홑화살괄호(<>)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u>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쓴다.</u> 예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국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 국화사무처예규 제31호(2010.12.27.전부개정)

제7조(법률 제명 사용에 관한 기준) 법률 제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쓴다.

1. ~ 2. (생략)

3. 법률안에서 다른 법률의 제명을 인용할 경우 그 법률의 제명이 한자이거나 한글·한자의 혼용이더라도 인용되는 제명은 한글로 쓰고 제명의 첫 글자 앞과 끝 글자의 뒤에 '낫표(「 」)'를 붙인다.

- 우형찬의원안 제2조제5호·제6호는 청소년유해환경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본 개정안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지원 근거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안 제14조의3 신설)하는바, 새롭게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 규정에서 명확하게 정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 관련 법령(「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 제48조 등)에 따른 정의("청소년유해환경")와 용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를 사용하여 적용상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 법령의 용어("청소년유해환경감사단")와 달리 개정안은 용어("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를 띄어쓰기하고 있는바, 법령의 용어 표기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민간의 감시·고발 단체) ① (생략)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종류는 학교 관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

- 우형찬의원안 제14조의3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근거(제1항) 및 자치구와 교육청, 경찰청,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제2항)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조문을 이동(현행 제14조의3 → 안 제14조의4) 하려는 것으로,
  - 관련 법령('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서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청소년보호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지원,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 장려, 청소년유해활동 규제 의무 등)을 의무화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청소년 보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 제14조의3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sup>1)</su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4조의3(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지원)</u> ① 시장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u>제14조의3 (생 략)</u>	<u>제14조의4 (현행 제14조의3과 같음)</u>

1)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청소년 보호법' 제48조 등)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자치구 지정)'에 대한 예산('25년 기준 139,000천원, 국비보조사업)을 매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안 제14조의3의 용어(서울특별시교육청)가 본 조례의 조문(제7조, 제19조)에서 사용되고 있는바, 최초 사용 조문(7조)에서 용어의 약칭을 규정하고, 이하 조문(안 제14조의3, 제19조)에서는 약칭된 용어(교육청)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전문위원회 실 수정 의견〉

현 행	우 형 친 의 원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청소년”이란 <u>청소년 기본법</u> 제3조(정의) 1항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 4.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청소년 기본법</u> 」 제3조제1항에 따른 ----- -----. 3. · 4. (현행과 같음)  5. <u>“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u>	
<신 설>  제7조(청소년의 참여) ① (생 략) ② 시장은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 2. (생 략) 3. <u>교육청</u> 및 자치구 청소년정책참여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 4. (생 략)	6. <u>“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u>	제7조(청소년의 참여) ① (생 략) ② 시장은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 2. (생 략) 3. <u>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자치구 청소년정책참여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u> 4. (생 략)

<p><u>&lt;신 설&gt;</u></p> <p><u>제14조의3(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지원)</u> ① 시장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u>제14조의3(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한 조치)</u> ① 시장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시적인 정신건강상태의 측정 및 검사</li> <li>2.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li> <li>3.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홍보</li> <li>4.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양성</li> <li>5. 그밖에 시장이 청소년 정신건강관리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u>제19조(구성)</u> ① (생 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서울특별시교육청</u>의 추천을 받은 사람</li> <li>2. ~ 3. (생 략)</li> <li>③ (생 략)</li> </ol>	<p><u>제14조의3(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지원)</u> ① 시장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b>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b>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b>교육청</b>, <b>서울특별시경찰청</b> 및 <b>유관기관</b>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u>제14조의4 (현행 제14조의3과 같음)</u></p>	<p><u>제19조(구성)</u> ① (생 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교육청</b>의 추천을 받은 사람</li> <li>2. ~ 3. (생 략)</li> <li>③ (생 략)</li> </ol>
---	---	---

- 한편, 우형찬의원안에 대해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유해환경 다양화에 따른 감시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의한다는 의견(원안 동의)을 제출하였음.

## 나. 청소년 중독 예방 등을 위한 환경 조성 내용 규정 (김기덕의원안)

- 김기덕의원안 제14조의2는 청소년 중독 예방 등을 위한 환경 조성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제목 변경(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 청소년 중독 예방 등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청소년 중독 예방 등을 위한 사업(중독 예방 → 중독 예방 및 치료, 중독 예방 교육·홍보 → 중독 예방 교육·상담·홍보,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신설)을 추가하고, 기존 조항을 이동(현행 제14조의2제3호 → 안 제14조의2제4호) 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제14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를 고려할 때, 청소년 중독 예방 등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 조사·연구 사업 신설의 내용을 추가하는 안 제14조의2 개정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의2(<u>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u>) ① (생 략)</p> <p>② 시장은 청소년 <u>중독을 예방하기</u>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u>교육·홍보</u> 및 정책개발 사업 <u>&lt;신 설&gt;</u></p> <p>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중독 <u>예방</u> 사업</p>	<p>제14조의2(<u>청소년 중독 예방 등을 위한 환경 조성</u>)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u>.</p> <p>1. (현행과 같음)</p> <p>2. ----- <u>교육·상담·홍보 -----</u></p> <p>3. <u>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사·연구</u></p> <p>4. ----- <u>----- 예방 및 치료 관련 -----</u></p>

※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4조(청소년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시장은 청소년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1. 모든 청소년이,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동등한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정책
  2.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안전을 위한 정책
  3. 청소년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공간 확보
  4.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 개선
  5. 청소년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7.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한편, 김기덕의원안에 대해 평생교육국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동의한다는 의견(원안 동의)을 제출하였음.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현종
------	-----	-------	-----